



제427회국회(임시회)
제3차환경노동위원회

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단기 휴업 시 신고 의무 면제〉

■ 정부제출(의안번호 제6419호)

2025. 7.

환 경 노 동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신항진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1. 단기 휴업 시 신고 의무 면제	2
※ 참고자료	5

I. 제안경위

2024년 12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,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(안 제33조의3).

Ⅲ. 검토의견

1. 단기 휴업 시 신고 의무 면제

개정안은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단기간(30일) 이내에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재개업하는 경우 신고 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임(안 제33조의3).

[개정안 조문대비표]

현행	개정안
제33조의3(휴업·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) ①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·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②·③ (생략)	제33조의3(휴업·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) ① ----- ----- 30일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30일 이상 휴업 후 재개업----- -----. ②·③ (현행과 같음)

현행법은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 행정청에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, 신고하려는 자는 보관 중인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그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(제33조의31)).

- 1) 「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3(휴업·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) ①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·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 중인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그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에 따른 휴업·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받은 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
신고서를 접수 받은 행정청²⁾은 동법 시행규칙³⁾에 따라 휴업·폐업·재개업 신고서와 함께 폐기물의 처리 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는데, 이때 신고서 내용의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, 적정하지 않은 부분은 보완 요구를 할 수 있음.

또한 신고하려는 자가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(제45조⁴⁾) 부과 대상이 되는 등 휴·폐업 신고 관련 일정한 행정적 부담이 존재하는 상황임.

이에 개정안은 30일 이내 단기간의 경우 신고 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으로, 신고와 관련된 각종 행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어 경영난 등으로 일시적으로 휴업을 해야 하는 영업자들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탄력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보임.

참고로 정부는 법제처 주관으로 ‘소상공인·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’의 국정과제를 위하여 영업자의 휴업신고 부담 완화를 내용으로 한 16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, 그 중 15개 법률에서 신고

2) 해당 신고수리 관련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법 제42조(권한의 위임·위탁)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고 있음.

3) 「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6조(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휴업·폐업·재개업의 신고) ①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의 휴업·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·폐가스류처리업 휴업·폐업·재개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.

1. 휴업·폐업의 경우

가.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 원본

나.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보관폐기물 처리계획서

2. 재개업의 경우: 제15조제1항 각 호의 서류
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내용과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결과를 확인하여 관계 법령에 적합하면 휴업·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.

4) 「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」 제45조(과태료)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5. 제3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아니한 자

가 면제되는 단기간을 30일로 설정하고 있음(참고자료 참조).

유사 입법례를 보면, 신고 면제 대상 기간의 경우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에 따른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은 30일, 「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⁵⁾」에 따른 마리나업은 15일 등으로 설정하고 있어, 대상 기간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.

문 의 처
02)6788-5546

5) 「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의4(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) 등록사업자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·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15일 이내의 휴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※ 참고자료 : 개정 대상(단기 휴업 시 신고 의무 면제) 법령 목록

연번	정비대상 법률	업종	개정 내용	소관 부처
1	법무사법	법무사업	·30일 이상 휴업시 휴업 신고	법무부
2	변호사법	변호사업		
3	외국법자문사법	외국법자문사업		
4	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	상시계측관리업		행정안전부
5	승강기 안전관리법	승강기 제조·수입업, 승강기 유지관리업		
6	자연재해대책법	방재관리대책 대행업		
7	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	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업		
8	인삼산업법	인삼류제조업		농림축산식품부
9	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	산림기술용역업		산림청
10	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	엔지니어링사업		산업통상자원부
11	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	폐자동차재활용업, 폐가스류처리업		환경부
12	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	통합허가대행업		
13	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	수중레저사업		해양수산부
14	어장관리법	어장정화·정비업		
15	항로표지법	위탁관리업		
16	수상레저안전법	수상레저사업	·15일 이상 휴업시 휴업 신고	해양경찰청